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0항제3호 중 "장외파생상품에"를 "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0조제3항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장외파생상품에"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융상품 중 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20 조제1항제5호를 적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 융상품

제10조제3항 중 "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"를 "이사회의 승인(다만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제3조제2항에 따른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 중 이사회가 없는 경우는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 구의 승인을 말한다.)을 받아야 한다."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상품 중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보험(부가특약 등으로 보험료 납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원화로 환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.)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의 확인) 법 제17조제2항, 법 제18조제2항, 법 제19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"이란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확인 받는 방식을 말한다.

제15조제2항제1호 중 "개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"을 "개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계약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"을 "법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성상품 계약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조합·단체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"을 "조합·단체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"을 "조합·단체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성상품 계약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"다음 각 목의 행위"를 "금융소비자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"로 한다.

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투자성 상품에 대한 법 제21조제6호 가목에 따른 행위로서 계약체결을 권유하기 전에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고 금융소비자가 계약체결의 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및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계투자,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로서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장내파생상품, 일반

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, 고난도투자일임계약, 고 난도금전신탁계약은 제외한다.)

- 가. 금융소비자의 연락정보 등 개인정보의 취득경로
- 나. 방문·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으로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
- 다. 방문·전화 등을 하려는 방문판매자등의 성명, 소속
- 라. 방문·전화 등으로 판매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·내용
- 마. 방문·전화 등으로 권유하려는 시간·장소

제24조제2항제1호 중 "권한 있는 기관"을 "권한 있는 기관(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서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, 법 또는 금융관계 법률에서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말한다.)"로 한다.

제26조제2항제1호 중 "(보장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보장성 상품만 해당한다): 해당 보장성 상품의 보장기간"을 "(보장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보장성 상품 및 거래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금융상품만 해당한다): 해당 보장성 상품의 보장기간 또는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기간"으로 한다.

제37조제1항제2호나목 중 "고난도투자일임계약"을 "고난도투자일임계약(단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숙려기간

이 경과한 날로부터 기산한다.)"으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"고난도금전 신탁계약"을 "고난도금전신탁계약(단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숙려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기산한다.)"으로 한 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① ~ ⑨ (생 략)	제2조(정의) ① ~ ⑨ (현행과 같
	승)
⑩ 법 제2조제9호마목에서 "대	①
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	
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	
한다.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투자성 상품의 경우: 다음	3. 투자성 상품의 경우: 다음
각 목에 해당하는 자 <u>(장외파</u>	각 목에 해당하는 자(<u>「자본시</u>
<u>생상품에</u> 관한 계약의 체결	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	시행령」제10조제3항제12호부
거나 청약을 받는 경우에는	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
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	해당하는 자가 장외파생상품
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알린	<u>에</u>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
경우로 한정한다)	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
	약을 받는 경우에는 전문금융
	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
	는 의사를 서면으로 알린 경
	우로 한정한다)
제3조(금융상품의 유형) ① 법 제	제3조(금융상품의 유형) ①
3조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금융상품"이란 다음 각	
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제10조(내부통제기준) ①·② (생략)

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 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 준을 제정・변경하는 경우 이사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승인으로 갈음할수 있다.

제11조(적합성원칙) ① 법 제17조 저 제2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 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 정보에 대해 해당 일반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금융상품의 범위는

4. MULMIOMIL I TE I
융상품 중 법 제19조제1항제2
호 및 제20조제1항제5호를 적
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
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
세10조(내부통제기준) ①·② (현
탱과 같음)
③
<u>0</u>]]
회의 승인(다만, 「금융회사의
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제3조제
2항에 따른 외국금융회사의 국
내지점 중 이사회가 없는 경우
는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
사결정기구의 승인을 말한다.)
<u>을 받아야 한다.</u>
,
세11조(적합성원칙) ①

/ 제9조제1하제7항에 따르 그

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음 각 목의 보장성 상품 가.•나.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① (생략)

② 법 제20조제1항제4호다목에 서 "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 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

가.・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 상품 중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 통화로 이루어지는 보험(부 가특약 등으로 보험료 납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원화로 환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를 포함한다.)

제11조의2(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의 확인) 법 제17조제2항, 법 제 18조제2항, 법 제19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"이 란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확인 받는 방식 을 말한다.

제15조(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) 제15조(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)

- ① (현행과 같음)

증을 요구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- 1. 개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. (단서 생략)
- 2. <u>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</u> 대출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 구하는 경우. (단서 생략)
- 3. 조합·단체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. 다만, 해당조합·단체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. (단서 생략)
- ③ (생략)
-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불공 정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 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- 1. 법 제20조제1항제1호: <u>다음</u> 각 목의 행위

가. ~ 다. (생 략) 제16조(부당권유행위 금지) ① 7

1. 개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
는 대출성 상품 계약에
(현행과 같음)
2. 법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
는 대출성 상품 계약에
(현행과 같음)
3. 조합・단체인 금융소비자와
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계약에
(현행과 같음)
③ (현행과 같음)
(4)
·
<u>.</u>
· 1 금융소비
자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다른
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할 것
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이에
준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제16조(부당권유행위 금지) ①

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행위"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말한다.

 1. 증권 또는 「자본시장과 금

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

 따른 장내파생상품에 대한

 법 제21조제6호가목에 따른

 행위

-----.

1. 투자성 상품에 대한 법 제21 조제6호 가목에 따른 행위로 서 계약체결을 권유하기 전에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 내하고 금융소비자가 계약체 결의 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 한 경우(「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| 에 따른 장 외파생상품 및 제2조제1항제3 호에 따른 연계투자, 일반금융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 하는 경우로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| 에 따른 장내파생상품,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권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, 고난도 투자일임계약, 고난도금전신 탁계약은 제외한다.)

<u>가. 금융소비자의 연락정보</u> 등 개인정보의 취득경로

<신 설>

업자의 고지의무 등) ① (생 략)

-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표지 | 게시 및 증표 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- 1.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표 📗 지나 증표를 사용할 것

나. 방문·전화 등 실시간 대화 의 방법으로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

다. 방문·전화 등을 하려는 방 문판매자등의 성명, 소속 라. 방문·전화 등으로 판매하 려는 금융상품의 종류·내용 마. 방문·전화 등으로 권유하 려는 시간·장소

제24조(금융상품판매대리 · 중개 | 제24조(금융상품판매대리 · 중개 업자의 고지의무 등) ① (현행 과 같음)

- 1. 권한 있는 기관(법 또는 금융 관계법률에서 인허가 또는 등 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등록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말하며, 법 또는 금 융관계 법률에서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 정한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 판매업자를 말한다.)-----

제26조(자료의 기록 및 유지·관 리 등) ② 법 제28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 란 10년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자료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.

1.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료 (보장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보장성 상품만 해당한다): 해당 보장성 상품의 보장기간

제37조(청약의 철회) ① 법 제46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 장성 상품, 투자성 상품, 대출성 상품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상품을 말한다.

- 1. (생략)
- 2. 투자성 상품: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. 다만, 일반금융소비 자가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 에 예탁한 금전등을 운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.

세20소(자료의 기독 및 ㅠ시・단
리 등) ②
1.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료
(보장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
보장성 상품 및 거래기간이
10년을 초과하는 금융상품만
해당한다): 해당 보장성 상품
의 보장기간 또는 해당 금융
<u>상품의 거래기간</u>
제37조(청약의 철회) ①
1. (현행과 같음)
2

가. (생략)

나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<u>고난도투자일임계약</u>

다. (생략)

라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<u>고난도금전신탁계약</u>

가.	(현행과 같음)
나.	
_	
_	고난도투자일임계약
(단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
-	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
Ţ	<u> 다른 숙려기간이 경과한 날</u>
i =	로부터 기산한다.)
다.	(현행과 같음)
라.	
-	
-	고난도금전신탁계약
<u>(</u>	단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
-	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
Ţ	<u> 다른 숙려기간이 경과한 날</u>
<u> </u>	로부터 기산한다.)